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차)

개최일시	2013.1.16(수) 18:00~23:2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 석 자 (12인)	오종근(교무처장), 조경원(총무처장), 신하윤(학생처장), 이명휘(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봉우리(총학생회장), 김경내(총부학생회장), 박아름(사회과학대학대표), 정은우(경영대학대표), 홍석영(동아리연합회회장), 나윤정(대학원학생회장), 서지희(외부전문가) (총 12인)		
불 참 자 (1인)	신경식(기획처장)		
안 건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2차)		
내 용	❒ 개회 오종근 위원장이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회하다. ❒ 회의내용 1. 1차 위원회 회의록 검토 및 합의 - 위원장을 교무처장으로 호선한다는 부분 : 수정사항 없음 - 회의록에서 서기록 공개가 불가한 근거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제기하다. - 법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서기록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다. - 회의록에 명시된 서기록 작성의 반대 이유가 추상적이며 그 당시에 왜 서기록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세한 이유들을 회의록에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다. - 자세하게 쓰는 것은 동의하지만 말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발언 그대로를 회의록에 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작성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다. - 발언 그대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맥락을 담아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더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된 1차 회의록에 관해서 서명하다. - 또한 앞으로 심의회의 공개에 있어서 회의록에 공개된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여 공개할 수 있음을 합의하다.		

	2. 논의사항 가. 운영방식에 대한 재논의 (1) 회의의 공개성에 대한 논의 - 지난 회의에서 서로 합의된 회의록을 통하여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동아리연합회에서 1차 회의의 회의록이 나오기 전에 자보로 공개했음을 문제 제기하다. - 학생은 학생들에게 참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의 자보를 규제한다면 알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자보를 쓰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니 회의록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게시한 자보를 떼거나 정정할 것을 요청하다. - 게시하였던 자보를 떼는 것은 스스로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뗄 수는 없으나 추가로 정정자보를 붙이고 앞으로는 회의록에 근거해서 쓸 것임을 합의하다. (2) 의원들의 노트북 지참 및 사용에 대한 논의 - 학생의원 6명이 모두 노트북을 지참하고 회의에 참석하다. - 학생위원의 노트북 사용을 한 대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다. - 1차 회의 때 노트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으니 회의록 초안 작성을 위한 한 대와 등록금 심의를 위한 두 대, 총 세 대 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이와같이 앞으로도 운영방식에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회의록 초안을 속기록의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을 남겨둘 것을 제시하다. - 노트북은 세 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록 초안을 상세하게 기록하되 위원회가 폐회할 때 까지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합의하다. 나. 우리학교의 재정현황 설명 (1) 우리학교 재정의 특징 - 본교는 불특정 다수의 기부금으로 설립 운영되며, 수익용 기본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익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최대이지만 예금만으로 기금을 운용 보유하여 기금의 규모가 쉽게 파악됨을 설명하다. (2) 사립대학 회계의 특징 - 등록금 회계와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회계를 분리해 놓았으며 등록금회계에서 유일하게 기금회계로 전출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임을 설명하다. (3) 재정운영의 철학 - 당해년도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그 중 기금회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재원의 확보, 지출 관리이므로 세대간 효익이 장기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감가상각분을 적립하고, 경상비가 아닌 건축비와 같이 여러 세대가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하여만 기금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함을 설명하다. (4) 기금회계 운영의 원칙 - 적립목적의 전입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며 외부기부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 적립하

	고 예금이자도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5) 기금회계의 조성경위에 관해 - 본교의 적립금 총액은 2001년 5,135억원에서 2012년 7,542억원(추경기준)으로 2011년 동안 적립금 총액이 2,407억원(토지매각대금제외 1750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2년의 토지매각대금 657억원을 제외하면, 예금이자 총액 3,104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차액 1,354억만큼 학교에 투자한 것임을 설명하다. - 2012년도의 경우에 토지매각대금 전입액 657억과 예금이자 298억, 적립목적의 자산전입금 43억을 합하면 약 1,0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하나 실제 694억만을 적립한 것은 기금 원금도 일부 사용한 것임을 설명하다. **다. 2013년 가예산** - 제일 큰 수입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수입은 동결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 전체 경상적인 운용 수입이 3,150억으로 추산되고 2012년 추경예산에 비해 5.0%의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였음을 설명하다. - 2011년 결산을 보면 이월금이 279억 가까이 책정됐는데 2013년 가예산의 82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를 의문을 제기하다. - 280억이 남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고 이월금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해에 순연하여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며, 올해에도 계획적으로 지출하여 이월금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전입기부금수입에서 기금회계전입금이 왜 들어가지 않는지 질문하고, 제시한 가예산은 기금회계가 등록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등록금과 관련된 경상예산만을 제시한 것임을 설명하다. - 법적으로 대학평의회에서 예결산 자문기능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대학평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예산, 결산 책정과정에 참가할 수 없고 오늘 받은 예산은 항목이 너무 개괄적이어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명시할 것을 요구하다. - 우리학교는 대학평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올해에는 구성을 준비중에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예산안을 공유한 목적은 큰 틀을 확인하고 등록금에 대한 앞으로의 프레임을 잡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다. - 세부 항목들도 정확하게 심의하고 등록금 심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3차 위원회에서는 항목 별로 정리된 예산안을 공유할 것 그리고 결산과 비교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합의하다. **라. 학생위원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논의** (1) 적립금 - 2011년과 2012년 예산에서는 2년간 540억이 적립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2011년 결산, 2012년 추경예산의 적립금을 합하면 약 1000억을 적립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 2011년에는 기금으로 충당하려던 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2년에도 657억의 토지매각대금이 추가적으로 전입되어 적립금이 증가한 것이며,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본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적립금과 등록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다.

	(2) 재단의 자산운영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이 학교로 전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학교에서 잘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다. - 우리학교 법인재단 수익용 자산의 75% 정도가 토지로 구성되어 있음이 게시되어 있어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재단에 재산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다. - 재단과 학교의 운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3) 국가장학금 -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등록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5가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정부에 94%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했고 운영계획도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제출하였는지를 질문하다. - 국가장학금은 MOU를 제출한 상태이고 운영계획은 2월 중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통하여 운영계획이 구체화될 것임을 설명하다. **마. 요구안을 담은 자보 게시** - 사실 관계나 숫자의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자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보를 부착해줄 것을 요구하고 부착된 자보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다. - 실제 수정될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부착한 자보에 대해서는 학생대표자 차원에서 합의 후 부착한 것이니 정정할 지 다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다. **❒ 폐회** - 다음 회의 진행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다. - 아직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등록금 심의는 3차 심의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 학생 측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였고 학교 측은 동결을 가정하여 가예산을 제시하였으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설명하다. - 학생 측 요구안과 요구한 자료들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다음 심의회까지 문서로 줄 것을 요구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 함. 2013년 1월 21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오종근	오종근	위 원	봉우리	봉우리
	위 원	신하윤	신하윤	위 원	김경내	김경내
	위 원	조경원	조경원	위 원	박아름	박아름
	위 원	이명휘	이명휘	위 원	정은우	
	위 원	서미옥	서미옥	위 원	홍석영	
	위 원	신경식	신경식	위 원	나윤정	
	위 원	서지희				